

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(안) 의견 청취의 건

의안 번호	9-82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공업지역기본계획은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,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기본 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법적근거

-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및 제9조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주요내용

- 목표연도 : 2030년
- 계획구역 : 안산시 공업지역 8개소(0.426km²)
 - 준공업지역 7개소(선부동, 월피동, 본오동, 사동, 팔곡이동, 팔곡일동, 초지동), 일반공업지역 1개소(사사동)
- 계획내용
 - (계획 개요) 계획의 배경 및 현황여건 분석
 - (수립 방향) 목표 및 전략,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, 공업지역 유형분류, 기본구상
 - (부문별 계획) 지원기반시설 계획 방향, 건축물 용도·밀도계획 관리방안, 환경관리방안, 공간정비방안 등

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(안) : 【붙임 2】

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(안)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

“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(안) 의견 제시의 건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함.

- 공업지역기본계획은 「도시공업지역법」에 따라 우리시에서 처음 수립하는 사항으로, 대상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사안임.
- 이에 따라, 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의 성장과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주거·상업 등 복합용도의 과도한 유입은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,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계획에 반영하여 주기 바람.
- 아울러, 기존 산업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대상지역별 맞춤 적용될 수 있도록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, 향후 지구별로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포함해 공간정비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단순한 공간계획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 하기 바람.